

# 공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에 관한 고시

포항시 고시 제 2016-69호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 
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.

- 허가번호 : 16-10
- 점용위치 : 장기면 계원2리 311-24번지선
- 점용목적 : 어업인 대기실
- 허가기간 : 2016. 4. 1. ~ 2021. 3.31
- 허가면적 : 32㎡
- 허가 연월일 : 2016. 6. 13
- 피허가자 주소 :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2리 350
- 피허가자 성명 : 어촌계장(김광욱)

2016. 6.

포 항 시 장